

세 무 서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근로장려금 ·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

귀하가 ()년 ()월에 신청한 ()장려금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1. 결정 내용 (년 소득분) (단위: 원)				
구분	결정금액	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	환수(차감)액	지급금액
근로장려금				
자녀장려금				
계				
2. 결정 근거				
3.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수령방법				
※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국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,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(☎1566-3636) 또는 아래 관할 세무서 담당자(기안자)에게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상담해 드립니다.				

세 무 서 장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4. 근로장려금 환수 내역 (년 소득분) (단위: 원)

환수대상 금액			당해연도 환수한 금액			미환수액 (⑦=①-④)
계 (①=②+③)	전년 이월 미환수액 (②)	당해연도 발생액 (③)	계 (④=⑤+⑥)	근로 장려금 (⑤)	자녀 장려금 (⑥)	

< 환수내역 안내사항 >

- 환수대상 금액의 계(①)는 전년도에 미환수된 잔액(②)과 당해연도에 추가로 발생한 환수대상 금액(③)의 합계입니다.
 - 당해연도 발생액(③)은 당해연도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을 의미합니다.
-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(④)는 당해연도에 환급할 근로장려금(⑤)과 자녀장려금(⑥)에서 차감하여 환수한 금액의 합계입니다.
- 미환수액(⑦)은 환수대상 금액의 계(①)에서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(④)를 차감한 금액입니다.
 - 미환수액은 10년간 발생하는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며, 10년간 차감한 이후에도 환수대상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득세로 고지합니다. 다만, 신청자가 미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합니다.